

충청북도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허창원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법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피복비 및 순찰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지원 범위 추가(안 제4조)

– “피복비, 장비, 순찰차량 구입” 추가

– “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” 추가

○ 중복되는 조항 정비(안 제3조 및 제4조)

– “피복비, 장비, 순찰차량 구입” 추가

– “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” 추가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피복비 및 순찰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제1항에 “피복비, 장비, 순찰차량 구입”과 “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”를 추가하고,
 -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제4조의 지원범위의 중복조항을 정비하였음.
 -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연합회의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와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경찰활동 보완 및 범죄 사각지대 자체 순찰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